

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

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 [] []
환자 성명 [] 투약일수 []
조제일 [] 야간(공휴일)조제 [] 야간 [] 공휴일
급여

항목	일부 본인부담		전액 본인부담		비급여
	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본인부담		
약품비	[]	[]	[]	[]	
조제기본료	[]	[]	[]	[]	
복약지도료	[]	[]	[]	[]	
조제료	[]	[]	[]	[]	
관리료	[]	[]	[]	[]	
선별급여	[]	[]	[]	[]	
65세 이상 등 정액	[]	[]	[]	[]	
기타	[]	[]	[]	[]	
합계	①[]	②[]	③[]	④[]	
⑤ 약제비 총액 (①+②+③+④)	[]		카드	[]	
		납부한 금액	현금영수증	[]	
⑥ 환자부담 총액 (⑤-②)	[]		현금	[]	
			합계	[]	
현금영수증()			*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		
신분확인번호	[]	[]	[]	[]	
현금영수증 승인번호	[]	[]	[]	[]	
처방한 요양기관	[] 의원급·보건기관 [] 종합병원	[]	[] 병원급 [] 상급종합병원(종합전문요양기관)	[]	
사업자등록번호	[]	[]	상 호	[]	
사업장 소재지	[]	[]	대 표 자	[] [인]	
전화번호	[]	[]	년 월 일	[] [인]	
항목별 설명				일반사항 안내	

- 일부 본인부담: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30% ~ 50%(의료급여 500원)이나,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- * 선별급여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)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.
 - 전액 본인부담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 또는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야간(공휴일)조제 등 이 계산서·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 1644-2000, 홈페이지: www.hira.or.kr)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계산서·영수증은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(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)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: http://현금영수증.kr)

주(註): 환자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